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3.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 군의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됨에 따른 개정임.

4. 주요골자

- 다음의 사회교육시설이 사회교육에 직접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 면제
 -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 한국노동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한국노동교육원
 - 교정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운수연수원
 - 사회교육원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5. 검토의견

-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 각종 사회교육시설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조례로서

- 1991년 11월 30일 개정공포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4410호)의 규정에 의거 박물관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본 감면조례 제2조 제5호의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로 개정하였고.
- 1991년 12월 14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에 의하여 현행 시·군이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 면제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사회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 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 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의가없으므로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 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음성나한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 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

○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음성나한자소유토지 및건축물에 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국장 유의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